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포전매매 거래 신고 의무화 등〉

- 임호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78호)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44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포전매매 거래 신고 의무화 등	4
가. 포전매매 거래 제도 현황	7
나. 안 제53조제4항 및 제90조: 포전매매 거래 신고 의무화	15
다. 안 제53조제5항: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당사자에 대한 지원	21
라. 안 제53조제6항: 포전매매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	26
마. 안 제53조제7항: 지원 및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규정	30
2. 포전매매 서면계약 위반 생산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삭제	33
가. 관계기관 의견	33
나. 검토의견	34
3. 부칙	37
※ 참고자료	
[참고]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39

I. 제안경위

1. 임호선의원안(2208578)

가.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2인

나. 제안일 : 2025. 2. 28.

다. 회부일 : 2025. 3. 4.

2. 소병훈의원안(2208644)

가.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나. 제안일 : 2025. 3. 4.

다. 회부일 : 2025.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임호선의원안(2208578)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5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포전거래는 불확실한 수확량, 작물 보관, 농산물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에게 필요한 제도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산자인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계약을 의무화 하였음. 그런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제90조제3항제3호의2 삭제).

2. 소병훈의원안(2208644)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포전매매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포전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거래 신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포전매매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Ⅲ. 검토의견

1. 포전매매 거래 신고 의무화 등

개정안은 ① 포전매매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② 포전매매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소병훈의원안 제53조 및 제90조).

현 행	소병훈의원안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관계 조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5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 양파·양배추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 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 행	소병훈의원안
<신 설> <신 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와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매년 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1.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매수인
2.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3.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현 행	소병훈의원안
3의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 전매매의 계약을 <u>서면에 의한</u> <u>방식으로 하지 아니한</u> 매도인	3의2.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 전매매의 계약을 <u>신고하지 아니</u> <u>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u> 매도인
4.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 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 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5.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6.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이 부과·징수한다.	

가. 포전매매 거래 제도 현황

포전(圃田)¹⁾매매(밭떼기 매매)는 농산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밭에 심어진 상태에서 일괄로 매매되어, 매도인(농민)이 약정된 기한까지 농산물을 관리하고, 매수인(산지유통인)에게는 잔금의 지급과 함께 농산물이 양도되는 농산물 거래 형태의 일종임.²⁾

< 농산물 거래 형태 >

연번	거래 형태	특징
1	수탁	- 농가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협에 판매를 위탁하면, 농협이 판매 대행 후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농가에 정산 - 판매되는 시점까지 농산물은 농가의 소유
2	매취(買取)	-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매입하면서 농가에 대금을 지급하고 농협이 다른 판매처로 판매 - 판매되는 시점부터 농산물은 농협의 소유
3	계약재배 매취	- 입식 전단계부터 어떤 품목을 어느 만큼 농협에 판매할지를 계약한 이후,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점에서 농협에 판매
4	포전매매	- 농산물이 수확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포전단위(면적) 또는 수량단위로 산지유통인에 판매하고, 산지유통인은 다른 판매처로 판매 - 판매되는 시점부터 농산물은 산지유통인 소유 - 계약 시점은 특정 시점이 정해지지 않고, 산지유통인과 농업인의 거래방식에 따라 ① 입식 이후 바로 체결, ② 생육단계 체결, ③ 출하 직전 체결 등 다양한 시점이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4. 17.

이는 농산물이 수확 이전의 시점에 매수인(산지유통인)에게 판매되어 그의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수확 이후 판매가 이루어지는 수탁·매취 등 다른 거래 형태와 차이가 있음.

1) 포전이란 “채소를 심어 가꾸는 밭”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고용철, “포전매매계약의 문제점과 표준계약서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포전매매는 구체적으로 매도인(농민)과 매수인이 수확기 이전에 식재된 농작물에 대하여 일괄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① 계약시 계약금, ②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중도금을 설정한 경우 중도금, ③ 최종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포전매매의 특징 >

구분	특징
계약체결시기	파종 후 농작물이 어느 정도 자란 후부터 수확기 이전까지
품목의 선정	농업인이 자기판단 하에 임의로 선정하여 식재
농작물 규격	규격과 관계없이 식재된 상태에서 일괄매매
대금지급방법	계약금(중도금) 지급 후, 잔금은 포전상태로 인도시 지급
위험부담	농업인(매도인) 또는 수집인(매수인)이 위험부담을 지거나, 농업인과 수집인이 공동으로 부담
소유권이전시기	계약체결시 또는 잔금지급시로 인식

자료: 고용철, “포전매매계약의 문제점과 표준계약서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p. 57.

포전매매는 선도³⁾거래의 일종으로, 수확기 이전에 거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래의 특정 시점에 대상 상품의 거래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선물거래⁴⁾와 유사한 특징이 있음.

다만, 공식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별 당사자(매도인·매수인) 간 직접 협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물거래와 차이가 있음.⁵⁾

3) 先渡, Forward. 거래 매매에서 계약 후 일정 기한이 지난 뒤에 화물이 인도되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 先物, Futures,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거래 종목(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포전매매의 가장 큰 특징은 ‘수확기 이전’에 ‘수량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거래함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① 계약시점과 수확기 사이의 기간이 길고, ②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와 작물 관리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좌우되며, ③ 농산물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큼.⁶⁾

이에 따라 계약 당시 인식했던 내용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가격·수량·품질 등의 측면에서 위험을 부담하게 됨.

예를 들어, 계약시점 대비 수확기의 농산물 가격 차이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계약 이후 기상 상황에 따른 풍작·흉작 여부에 따라 동일 면적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의 수량·품질이 상이할 수 있음.

포전매매는 식량작물, 채소류, 과일류 등의 농산물에서 이루어지는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이하 “aT”라 한다)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포전매매율은 다음의 표와 같음.

<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포전매매율 >

(단위: %, %p)

구분				2022년(A)	2023년(B)	증감(B-A)
1	식량작물	①	콩	28.0	26.0	△2.0
		②	봄감자	37.0	33.0	△4.0
		평균		32.5	29.5	△3.0

5) 김완배·김성훈, 「농식품유통론」, 박영사, 2020, p. 192.

6) 고용철, 앞의 글, p. 58.

구분				2022년(A)	2023년(B)	증감(B-A)
2	엽근채류	①	봄배추	100.0	100.0	-
		②	고랭지배추	71.0	71.0	-
		③	가을배추	85.0	85.0	-
		④	월동배추	90.0	89.0	△1.0
		⑤	봄무	90.0	90.0	-
		⑥	고랭지무	71.0	61.0	△10.0
		⑦	가을무	83.0	82.0	△1.0
		⑧	월동무	60.0	47.0	△13.0
		평균		81.3	78.1	△3.2
3	과채류	①	수박	71.0	79.0	8.0
		평균		71.0	79.0	8.0
4	조미채소류	①	마늘	17.0	10.0	△7.0
		②	양파	35.0	35.0	-
		③	건고추	58.0	58.0	-
		④	대파	82.0	87.0	5.0
		평균		36.7	47.5	10.8
5	과일류	①	사과	7.0	7.0	-
		②	배	21.0	25.0	4.0
		③	감귤	39.0	44.0	5.0
		평균		22.3	25.3	3.0

주: 음영 표시는 2023년 포전매매율이 50% 이상인 품목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23년 유통실태 종합 - 종합분석」, 2025, p. 13.

2023년 기준, 주요 농산물 중 엽근채류인 무·배추, 과채류인 수박, 조미채소류인 건고추·대파 품목에서 포전매매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포전매매가 비중 있는 거래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임.

이들 품목의 2023년 포전거래가격은 다음과 같은데, 가격 변화에는 기상 여건·기대심리·병충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주요 농산물의 2023년 포전거래가격 >

구분				단위	2022년 (A)	2023년 (B)	증감 (B-A)	비고
1	식량 작물	①	콩	원/kg	4,600	4,750	150	생육기 기상 악화로 품위 저하
		②	봄감자	원/3.3m ²	6,500	6,750	250	직접비용 상승
2	엽근 채류	①	봄배추	원/3.3m ²	5,500	7,000	1,500	판매처(김치가공) 수요 감소로 고랭지 및 가을배추의 포전거래가격 하락
		②	고랭지배추	원/3.3m ²	14,000	13,500	△500	
		③	가을배추	원/3.3m ²	7,500	6,500	△1,000	
		④	월동배추	원/3.3m ²	9,000	10,500	1,500	
		⑤	봄무	원/3.3m ²	10,000	13,000	3,000	작황 부진으로 거래물량 확보를 위한 포전거래가격 소폭 상승
		⑥	고랭지무	원/3.3m ²	14,000	13,000	△1,000	
		⑦	가을무	원/3.3m ²	7,000	10,000	3,000	
		⑧	월동무	원/3.3m ²	5,000	7,500	2,500	
3	과채 류	①	수박	원/개	13,750	11,875	△1,875	수확시기 기상악화로 품위 저하
4	조미 채소 류	①	마늘	원/kg	17,000	11,750	△5,250	-
		②	양파	원/20kg	14,000	12,250	△1,750	-
		③	건고추	원/kg	10,000	12,800	2,800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강세 기대심리로 포전거래가격 상승
		④	대파	원/3.3m ²	22,000	16,000	△6,000	공급량 회복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포전거래가격 하락
5	과일 류	①	사과	원/kg	1,800	2,000	200	고령화로 인한 폐원과 병충해 발생으로 작황 부진
		②	배	원/kg	1,400	1,600	200	
		③	감귤	원/3.75kg	4,000	4,750	750	사과, 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감귤 수요량 증가

주: 음영 표시는 2023년 포전매매율이 50% 이상인 품목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23년 유통실태 종합 - 종합분석」, 2025, pp. 14~15.

한편, 포전매매는 오래 전부터 거래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1994년 11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채소류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 대한 서면계약 및 표준계약서 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① 관련 과태료 규정이 없어 서면계약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었고, ② 표준계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닌 농업협동조합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22일 「농안법」 개정을 통하여 ① 서면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② 표준계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 현행 「농안법」 제53조의 조문 변화 >

1994년 11월 신설 (1994. 11. 1. 시행)	2012년 2월 개정 (2012. 8. 23. 시행)	현행 「농안법」
제43조 (포전매매의 계약) ① <u>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u> 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u>서면에 의한 방식</u> 으로 하여야 한다.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u> 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u>서면에 의한 방식</u> 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u> 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u>서면에 의한 방식</u> 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1994년 11월 신설 (1994. 11. 1. 시행)	2012년 2월 개정 (2012. 8. 23. 시행)	현행 「농안법」
② <u>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u> 이를 계약서의 작성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품목·지역과 신고기간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u>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u>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0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과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u>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9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0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과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u>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994년 11월 신설 (1994. 11. 1. 시행)	2012년 2월 개정 (2012. 8. 23. 시행)	현행 「농안법」
	는 <u>100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과한다. 3의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u>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u>	는 <u>100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과한다. 3의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u>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u>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3. 13.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음.

한편, 현행법 제53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 대하여만 포전매매 서면계약제 및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5호)에서는 ① 양파, ② 양배추의 두 가지 품목만을 대상으로 규정함.

다만, 최근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2024. 5.)”에서 공정한 포전거래 유도를 위하여 서면계약 의무 품목에 ‘배추’와 ‘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⁷⁾

참고로 배추와 무는 앞서 살펴본 aT의 2023년 유통실태에서 ‘월동 무’를 제외하고는 포전매매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는 주요 포전매매 품목임.

7)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2024, p. 11.

나. 안 제53조제4항 및 제90조: 포전매매 거래 신고 의무화

소병훈의원안은 현재 양파 및 양배추의 포전매매에 대하여 적용되는 「농안법」 제53조제1항의 서면계약제에 대하여, 그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소병훈의원안 제53조제4항 및 제90조).

현 행	소병훈의원안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관계 조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5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 양파·양배추	
②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 ⑦ (생 략)
제9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1.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매수인
2. ~ 3.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현 행	소병훈의원안
3의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u>서면에 의한 방식</u> 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3의2.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u>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u> 매도인
4. (생략) 4의2. (생략) 5. ~ 6. (생략) ④ (생략)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포전매매 서면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고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있음.

다만, 사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대하여 국가의 지나친 규제가 될 우려가 있고, 모든 포전매매를 신고하는 경우 농업인, 산지유통인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함.

(2)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영세농 및 고령농의 절차 이행이 취약할 수 있고, 소면적·소물량 농가의 비용적·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3)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⁸⁾

모든 포전매매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면 포전거래 기피로 거래가 위축되고 생산 농가의 판로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우려됨.

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계약 당사자 일방인 매수인(산지유통인)측 단체임

2) 검토의견

현재 현행법 제5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인 양파와 양배추에 대하여 포전매매 서면계약제가 운영 중에 있어, 포전매매 계약을 구두 등의 방식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체결해야 함.

서면계약은 계약의 형태 및 증거가 문서로서 남는다는 점에서 구두계약에 비하여 계약파기 등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일부 품목(양파, 양배추)의 포전매매에 있어 서면계약제가 운영되는 상황임.

그런데, 서면계약제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전매매 계약이 대부분 구두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⁹⁾ 그 실효성 확보수단인 과태료 제도는 실제로 부과된 사례가 없음.

현행법이 일부 품목에 대하여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를 부여하지만, 이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포전매매 계약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즉, 현행법은 제53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품목·지역 및 신고기간을 정하여 포전매매 계약 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가 실제 운영된 적은 없음.

9) 한국농어민신문, “포전매매 계약규정 유명무실... 의무대상 작물 2종 뿐”, 2024. 10. 8. (2025. 4. 9. 확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324>

이에 개정안은 현재 양파와 양배추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포전매매 서면계약제에 대하여, ① 서면계약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②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신고의무 위반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신고의무 부여를 통하여 서면계약제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의 신고를 통하여 포전매매 계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현행 포전매매 서면계약제에 신고의무를 추가하여 규율의 정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인바, 농산물 계약 실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포전매매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일대일 계약이 아닌 일대다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계약과정에서 마을 이장 등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 또한 있음.

이 경우 신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다른 매매방법에 비하여 포전매매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농산물 계약 실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임.

또한, 현재 포전매매 서면계약제는 양파와 양배추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2024. 5.)”을 통하여 무와 배추를 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앞서 살펴본 aT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포전매매율은 2023년 기준 78.1%로서 포전매매가 주요한 거래방식에 해당하므로, 포전매매 서면계약제에 신고의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향후 품목 확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임.

따라서, 개정안이 농산물 계약 실태 및 향후 제도 변화 방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신고 의무를 부여하는데, 신고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개정안과 유사한 제도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있는데, 해당 제도에서는 ① 임대차계약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②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¹⁰⁾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개정안의 신고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비교 ＞

구분	개정안 포전매매 서면계약 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자	포전매매 계약 당사자	임대차계약당사자
신고방식	규정 없음	1. 당사자가 <u>공동으로 신고</u> 2. 단, <u>일방</u> 당사자가 <u>신고 거부</u> <u>시 단독 신고</u> 가능
미신고 제재	1. 매도인: 100만원 이하 과태료 2. 매수인: 5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거부 제재	규정 없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19.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신고 의무를 부여하지만,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지 또는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지 등의 신고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음.

따라서, 계약당사자 중 누가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를 공동으로 하는지 혹은 단독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유사하게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되,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계약신고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안 제53조제5항: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당사자에 대한 지원

소병훈의원안은 현행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서면계약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게 「농안법」상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소병훈의원안 제53조제5항).

현 행	소병훈의원안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관계 조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5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 양파·양배추	
②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④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④ (생 략) <u>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⑥ (생 략) <u>⑦ 제5항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표준계약서에 따른 서면계약 확대를 위하여 소병훈의원안과 같은 사용 당사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포전매매의 양성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임.

(3)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포전매매 매수인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검토의견

개정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포전매매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농안법」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서면계약제 대상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당사자는 ①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받고, ② 제도를 이행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유인 구조가 형성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지원규정을 통하여 포전매매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고 서면계약을 활성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체계에서 대부분의 입법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유사 입법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개정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계약 당사자에 대한 유인으로 서 “이 법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문언 중 “이 법(「농안법」)에 따라”의 의미가 모호해 보임.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 주체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농안법」상 주요 재정적·행정적 지원 규정 >

연번	근거조항	지원내용
1	제4조제1항	<u>지정된 주산지의 주요 농수산물 생산자</u> 에 대한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
2	제4조의2제4항	<u>주산지협의회 및 중앙협의회</u>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제6조제2항	<u>계약생산자 또는 계약출하자</u> 에 대한 계약금 대출 등 필요한 지원
4	제12조제2항	<u>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단체</u>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
5	제29조제6항	<u>산지유통인</u> 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제51조제1항	<u>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u> 를 설치·운영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
7	제69조제2항	<u>종합유통센터</u> 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

연번	근거조항	지원내용
8	제70조제3항	<u>유통자회사</u>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9	제70조의2제2항	<u>농수산물 전자거래</u>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	제73조	<u>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u> 에 대하여 융자하거나 보조금 지급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17.

이들 지원규정 중, ① 「농안법」 제4조제1항¹¹⁾은 포전매매 매도인인 농민이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라면 적용될 수 있고, ② 포전매매 매수인인 산지유통인에게는 「농안법」 제29조제6항¹²⁾이 적용될 수 있음.

그런데 주산지의 생산자와 산지유통인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규정을 직접 근거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게 “이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보임.

유사 입법례의 경우, 특정한 행위 등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경우 대체로 ① 단순한 “지원 근거”만을 규정하거나, ② “우선적” 지원을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③ “이 법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11)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유인으로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 >

구분	유사 입법례	
지원근거만을 규정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선적 지원을 규정	1	「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5조(공동 관리·운영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호텔업자가 다른 호텔업자 또는 호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관리체제를 가진 자와 호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17.

이를 고려하면, ① 개정안이 단순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면 ‘지원 근거’만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는 ② 계약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상 지원규정에 대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면, 명시적으로 우선적 지원사항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라. 안 제53조제6항: 포전매매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

소병훈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소병훈의원안 제53조제6항).

현 행	소병훈의원안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와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매년 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포전매매 현황 파악과 포전매매 계약 미이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함.

(2)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포전매매에 관한 실태조사는 품목별 의무자조금 조직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임.

2) 검토의견

현재 포전매매에 관한 대표적인 현황 자료로는 aT가 발표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조사”의 포전매매율과 포전매매가격 동향이 있음.

다만, 공공기관인 aT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고, 해당 조사는 ‘유통실태’ 조사이므로 ‘포전매매’만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님.

또한, 해당 조사는 aT가 주산지 3~5개 지역을 표본조사하여 농산물의 유통비용 및 거래실태를 조사한 것이고, 그 품목도 주요 농산물 35품목(48종류)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¹³⁾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전매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포전매매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앞선 aT의 조사 결과에서 주요 농산물의 포전매매율이 낮지 않음을 고려하면 포전매매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요구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우선 포전매매 현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력·예산규모 등의 이점을 가지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1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3년 유통실태 종합 - 조사개요」, 2025, pp. 3~6.

한편, 포전매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에서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자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조금단체를 통하여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경우, 생산자가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이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므로,¹⁴⁾ 의무자조금단체 또한 실태조사 수행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포전매매 서면계약제를 시행하는 품목인 양파와 양배추 중 양파¹⁵⁾에만 의무자조금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도 주요 포전매매 품목인 무, 배추 등의 경우 의무자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¹⁶⁾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포전매매 품목 자조금 설치 여부 >

구분	포전매매 서면계약제 대상품목 여부	자조금 설치 여부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미설치
양파	대상	○		
양배추	대상			○
무	미대상		○	
배추	미대상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21.

14)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의무거출금은 농수산업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15) 한국양파연합회

16) 참고로, 무와 배추에는 현재 임의자조금(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이 설치되어 있음

한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 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데, 농산물이 품목별·지역별로 거래 실태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실태조사’를 ‘품목별·지역별 실태조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안 제53조제7항: 지원 및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규정

소병훈의원안은 안 제53조제5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소병훈의원안 제53조제7항).

현 행	소병훈의원안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u>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신 설></u>	<u>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와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매년 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⑦ 제5항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지원사항과 실태조사에 관련한 사항은 현장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으로 보임.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안 제53조제5항의 지원 규정과 제6항의 실태조사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그 위임의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중 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② 실태조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입법례를 찾아보면, 그 하위법령의 수준은 다양한 것으로 보임.

< 지원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례 >

구분	입법례	
대통령령 위임	1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2	「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령 위임	1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촌 주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밀산업 육성법」 제6조(실태조사)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19.

「농안법」 내에서는 ① 지원의 경우 다양한 지원규정에서 대통령령, 부령 등 상이한 수준으로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고, ② 조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의한 조사로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이 있는데, 전담기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안법」 상의 지원 및 조사 관련 위임 규정례 >

구분	규정례	
행정적·재정적 지원	1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③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u>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u>
조사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u>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19.

그러므로, 위임의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지원사항과 실태조사 사항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2. 포전매매 서면계약 위반 생산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삭제

개정안은 현행법 제53조제1항의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매도인(생산자)에게 적용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임호선의원안 제90조제3항제3호의2 삭제).

현행	임호선의원안
※ 관계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5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 양파·양배추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2.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3.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의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삭 제>
4.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5.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6.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포전매매의 당사자에는 매수인(산지유통인)과 매도인(농업인)이 모두 해당하고, 현행법도 서면계약 의무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됨.

또한 일부 매수인이 과태료를 지불하더라도 가격 급락시의 위험 회피를 위하여 구두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서면계약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포전매매 당사자 간 형평성과 서면계약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과태료 체계의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의견

매도인인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없는 경우 서면계약 의무화의 정착이 어려움.

또한 가격 하락시 매수인의 계약파기 위험 존재와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시 매도인의 계약파기 위험이 존재하므로, 현행과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과태료 부과가 필요함.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산물(양파 및 양배추)의 포전매매 시 그 계약 당사자에게 서면계약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이행 확보수단으로서 위반 매수인 및 매도인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함.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와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 매도인인 농산물 생산자가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 원안에는 매수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만 있었음.¹⁷⁾

다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① 주로 매수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면계약을 회피하고 농가(매도인)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② 매도인 역시도 서면계약을 회피하거나 농산물 가격상승 시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는 정부의 의견이 제시되었음.¹⁸⁾

이에 따라, 매수인은 물론 매도인에게도 과태료를 적용하되, 과태료 금액에는 차등을 두기 위하여 매수인(500만원 이하)보다 낮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여 대안에 반영하였고,¹⁹⁾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다만,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었음.

17) 김효석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284)”, 2011. 6. 20.

18) 농림수산물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 10.

19) 농림수산물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814298)”, 2011. 12. 18.

개정안은 매도인(생산자)에게 적용되는 해당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계약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매도인을 보호하려는 서면계약 제도의 취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

구분	현행법	개정안
서면계약 의무	매도인(농민)과 매수인(산지유통인) 모두에게 부과	
의무 위반시 과태료	매도인: 100만원 이하 매수인: 500만원 이하	매도인: 없음 매수인: 500만원 이하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21.

다만, 사적 계약 관계에 대하여 국가가 계약 당사자 양측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과거 심사과정에서도 매도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여 반영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부칙

두 건의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임호선의원안	소병훈의원안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수용함.

나. 검토의견

두 건의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

소병훈의원안의 경우, 안 제53조제7항에서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 정비에 요구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할 수 있음.

임호선의원안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산물 매도인(농가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농산물 매도인에게 있어 유리한 법률 개정이긴 하지만, 포전매 매 서면계약의 상대방인 농산물 매수인(산지유통인 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주체들의 제도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할 수 있음.

따라서 두 건의 개정안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아래 목적물을 포전매매 함에 있어 매도인(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도인(갑)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주소 :
매수인(을)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주소 :
소재지 :
품목 : 품종 : 계약면적 : m² (평)
파종일(또는 정식일) : 20 . .
총 매매대금 : 원
계약일 :
계약금 : 원 계약금지급일 :
(중도금) : 원 (중도금지급일) :
잔금 : 원 잔금지급일 :
반출일 :
갑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
*긴급연락처 :
을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
*긴급연락처 :
특약사항

<주의사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표시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표식’을 사용하는 매수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조(매매대금)

- ① 총 매매대금은 위 금액이며, 잔금지급은 포전매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농작물의 평균적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양당사자에게 공평하다. 잔금지급기일은 위 기재일이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중도금을 약정할 수 있다.
- ② 을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해당농작물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 ③ 이 계약에서 정한 매매단위별 단가로서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제2조 (계약금)

- ① 포전매매는 선도거래의 성격으로서 계약금이 총 매매대금의 30% 이상 지급되어야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형평에 맞으며 이 건 계약금은 위 기재금액으로 한다.
- ② 계약금이 지급된 이 건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갑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총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한다.

제3조 (목적물의 확인)

- ① 을이 포전매매목적물의 현황확인을 위하여 갑에게 위 목적물표시상 소재지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제출을 요청할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공부(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상의 명의인과 갑이 다를 경우에 그 사유를 을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직접 목적물에 대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을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본인이 알고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농작물의 종자에 대한 정보, 위해조수출몰, 농지가 맹지여서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여부,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작여부 등)를 계약 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계약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면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측량기를 이용해서 재배면적을 측량할 수 있다.

제4조 (목적물의 인도, 거래표지판 설치)

- ① 갑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
- ② 갑의 인도로 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며, 목적물이 을에게 인도되었음을 외부에 알리고,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의 손실부담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팻말을 부착하는 등의 거래내용표지판을 설치하며, 그 실행은 갑과 을이 협의하기로 한다.
- ③ 거래표지판에는 계약당사자의 성명, 품목, 계약면적, 계약체결일 및 반출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제5조 (목적물의 관리)

- ① 갑은 약정 반출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② 갑이 목적물을 관리하는 내용은 용수, 시비, 방제, 제초 등으로 통상적으로 해당 목적물에 대해 시행하는 정도의 관리를 그 범위로 한다.
- ③ 갑이 실시하는 통상적인 관리범위를 넘어서 실시하도록 을이 요청한 경우에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을이 받아들이기로 한다.

제6조 (목적물의 반출)

- ① 예상하지 못한 기상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성장이 늦어진 경우에 을의 목적물반출은 후작의 경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협의하에 반출일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목적물의 수확·반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③ 목적물반출일 이전에 을이 반출지연사유와 반출연장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같은 1회당 10일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허용하기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11조(통지방법)의 통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반출일 연장으로 인하여 갑에게 관리비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을이 변상하여야 한다.
- ⑤ 연장된 반출일이 지나도록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남아있는 목적물은 갑이 임의로 처리한다.

제7조 (위험부담)

- ①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이 잔금을 수령한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 ② 병충해 등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침습의 경우, 관리상의 잘못이 아닌, 종자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중대한 결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조수 등 위해 동식물로 인해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실의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의 잔금 수령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위 제2항의 경우에 위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사전 미고지로 조수피해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책임이 있다.
- ④ 목적물의 가격 폭락 및 폭등은 포전매매계약의 특성상 대금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제8조 (담보책임)

계약체결 후 계약의 양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품질, 수량, 계약면적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제9조 (계약해제)

- ①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독촉)를 하지 않고서 계약해제 할 수 있다. 단 매수인에게 유책사유 없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불이행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해제할 수 있다.
- ② 갑에게 책임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이행거절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때(이중매매 등)
 2. 갑이 통상적인 관리행위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에게 통지하여 을의 판단이 필요할 때 이를 게을리 하여 을에게 큰 손해를 야기케 한 경우
- ③ 을에게 책임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④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관계해소 후 갑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은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로 한다.

제10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

-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반출하지 아니할 때 그 기간 즉 반출약정일 후 10일이 지난날에 계

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그 밖의 위약금,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기존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을이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그 반출연장기간은 최초에 정한 반출예정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반출기간연장도 2회에 한정하기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11조(통지방법)의 통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반출지연에 따른 손해는 별도의 위약금약정으로 정하기로 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예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통지방법)

① 목적물의 관리 과정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하여 상호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이 연락처에 2일(48시간) 내에 3회(1일 2회 이내)이상 연락하였음에도 연락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당사자 쌍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전항의 연락에 대한 수단으로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휴대폰문자,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④ 통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는 이 계약내용을 준수하는 한 책임지지 않기로 한다.

제12조 (위약금)

① 제9조(계약해제)에서 규정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약금은 총매매대금으로 한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위약금은 총매매대금으로 한다.

② 제3조 제3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의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이 계약서 전면 개별약정 기재사항에 기재하기로 한다.

제1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목적물의 표시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